

SI 산업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현수*, 김중한**

*국민대학교 정보관리학부,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An Improvement of SI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Kim, Hyunsoo, Kim, Joong Han

Kookmin University, Kyonggi University

E-mail : hskim@kookmin.ac.kr, jhkim@mis.kyonggi.ac.kr

요 약

최근에 들어 S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S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SI 산업의 특징을 파악한 후, SI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토의한다. 본 연구는 광범위한 법과 제도의 체계 전체를 다루지 않고 그동안 산업계와 관련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토의하였다. 산업구조에 대한 논의와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가능한 종합적인 분석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엄격한 방법론적 접근이나 통계적 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적 분석을 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향후 체계적인 접근과 실제 데이터에 의한 검증 및 연구의 심화가 필요하다.

1. 서론

IT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IT 서비스의 핵심 사업인 SI(System Integration)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SI 사업의 일반 용역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법과 제도의 규제를 받으며 수행되어 왔다. 그런데 SI 사업은 일반 용역사업과 다른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SI 사업은 그 범위가 넓고 독특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범위와 특성에 맞는 법과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SI 사업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이다. 즉 SI 사업은 고객의 시스템 차원 요구를 충족시키는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컨설팅 요소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SI 사업은 프로젝트관리와 시스템 요구 분석

등이 중심이 되는 기술이며,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SI 산업의 핵심기술은 컨설팅 기술,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및 통합능력, 시스템 통합기술,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설계 지식, 프로젝트 관리기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기술, 객체지향 기술 등으로서 범위가 넓고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사업의 계약과 사업의 관리 프레임워크가 일반 용역사업과 달라야 하고, 이를 규제하는 계약관련 법령이나 제도와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SI 사업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SI산업이 국가의 전략산업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토의한다.

제 2 장에서는 SI 사업과 관련 법제도의 특징

및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제 3 장에서는 중점 개선 과제에 대해 제안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제 4 장에서는 제도화를 위한 연구의 심화 방안을 토의한다. 5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한다.

2. SI 사업 및 관련 법제도의 특징

SI 사업에 대한 국제 분류를 참고하여 연구한 신규분류체계에서는 SI 사업의 범주에 아래 항목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김현수 외, 2002]

- 컨설팅: IT 관련 전략이나 기획 관련 컨설팅
- 소프트웨어개발형 SI: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응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 패키지 통합형 SI: ERP, SCM, CRM, SEM 등 비즈니스 패키지를 사용하여 시스템 요구를 만족시키는 사업
-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통합을 수반하는 개발활동이 아닌 프로그래밍 위주의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 네트워크 통합: 데이터통신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구축하는 사업
- 하드웨어 설치 및 지원: 하드웨어 디바이스의 설치와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
- DB 구축: 각종 형태의 자료구축 서비스, 통계자료, 텍스트, 이미지, 공간정보 자료 구축 서비스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 용역사업과 다른 특징을 가진다.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 1) 고객 요구사항의 점진적 발전: 사업수행 시작 시점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100%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사업수행 단계가 진전됨에 따라 점점 구체화되는 특징이 있다. 요구사항의 변경과 요구사항 구체화의 경계가 모호하여 수주자와 발주자간에 견해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2) 계약목적물의 명확성 미흡: 고객 요구사항이 확정적이지 못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계약문서를 명확화하기 어렵고 유지보수와 하자보수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며 검수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지체 상금을 처리하기도 어려우

며, 지적 재산권에 관련한 문제도 발생한다.

3) 납기 및 품질과 가격의 관계 복잡: 요구사항의 발전으로 인한 납기의 지연과 가격 반영에 관련된 문제가 복잡한 특징이 있다. 수주자와 발주자간에 요구사항의 변경과 발전에 대한 견해차이가 많아 사후 정산의 어려움이 많으며, 불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인하여 사업 대가를 명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또한 사업대가는 품질의 함수가 되는데, 품질의 수준에 대한 계량적인 측정이 어려워 적정한 대가수준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한편 이와 같은 SI 사업의 특징을 우리의 SI 산업 관련 법 제도가 반영하고 있는 정도는 미미한 수준인데, 아래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제시한다.

우선 계약에 관련하여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모든 계약유형을 공사, 물품(제조, 구매) 및 용역으로 구분하여 각 일반조건을 제정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다. 기술용역의 경우 설계 및 감리 용역, 학술연구용역 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의 점진적 발전과 계약목적물의 불명확성, 품질과 사업대가의 관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SI 사업은 유지보수를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며, 다수의 전문기술 보유업체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일반 용역사업보다 범위가 넓고 규모도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반용역 조건으로 계약을 수행하게 될 경우 발주자와 수주자는 업무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의 SI 관련 법제도는 별도의 제도를 가지지 못하고 기존의 타 사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법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련 법제도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우선 계약관련 법령체계는 다음과 같다. 모든 물품, 공사와 같이 SI 사업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회계예규/통칙/요령/기준/질의 응답(유권해석) 등의 적용을 받으며, 각 공공기관 등은 법에 기초하여 자체적인 계약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간접적인 규율이나 지원 관련 법률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대표적이며, 법 및 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기준 등이 계약사무에 적용된다. 기타 해당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립한 지방 행정업무 전산화 용역 개발지침, 건설기술관련 규정, 자체 회계, 구매, 용도 규정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자체 규정들은 국가계약법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계약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계약사무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계약절차는 입찰이전, 입찰, 낙찰, 계약, 계약 이후 이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SI 사업의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입찰, 낙찰, 계약 부분이다.

현행 제도상 입찰절차는 크게 경쟁입찰과 비경쟁입찰(수의계약)로 구분되며, 경쟁입찰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일반경쟁은 단순하고 공정한 절차이나,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경쟁 과열 및 공사의 부실화 우려가 있고, 제한 경쟁은 부적격업체를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객관적인 제한 기준의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지명경쟁은 지명에 있어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어려우며, 담합의 소지가 있다. 2단계 경쟁입찰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우수 기술 보유업체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일정한 품질 수준 확보가 가능하나, 입찰 기간이 장기화되고 불공정의 소지가 있다.

현행 낙찰제도는 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낙찰제, 종합낙찰제, 협상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최저가 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적격심사제는 시공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 수행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최저가순으로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의 공급자들에게 제안요청서를 송부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데,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추진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도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방식이며, 가격 비율이 높은 경우 취지가 많이 약화된다[박윤기 외, 2001].

SI사업에 적합한 계약제도 등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계약제도 특징을 분석한다. 미국의 경우 경쟁입찰과 협상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데, 핵심적으로는 기술 및 이행 능력과 가격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인 구매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자율성이 보다 많이 인정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단일공급원 협상(Solo Source Negotiation), 허용최저가(Lowest-Price Acceptable Proposal), 최대가치 개념(Greatest Value Concept), 총점제(Total Point System) 등을 고르게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약소경제주체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우대조달제도(예: 소기업법 15조 g항, 당해연도 모든 주계약사업의 23%를 중소기업에 수주 보장), 소수민족 및 여성사업자 지원제도 등을 구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가 우선이나, 계약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심의하여 저가 입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저가 낙찰제도를 기본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비정상적인 입찰자는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계약 및 도급에 관련한 특징으로는 요구사항 정의의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발주자나 원도급자가 수주자나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수주자와 발주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발주자나 원도급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조정이 진행된다. 2001년 조사에서 하도급을 위탁하는 비율은 30% 이하가 73.5%, 31-50%가 20.6%, 51-80%가 5.9%로 나타나[김관보 외, 2001] 상당 부분이 하도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탁사유도 '수탁불량의 과다'가 39.7%, '전문성 부족'이 48.5%로 나타나고 있어 하도급 추세가 향후에도 보편적인 추세일 것으로 분석된다. 하도급 계약금액 단가 인하가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인하 단가 제시'인 경우가 39.5%이며, 선금금 지급시기도 '15일 초과 20-80% 지급'인 경우가 61.3%정도이며, 하도급 위탁 취소/변경 비율도 27%에 이르고 있어[김관보 외, 2001], 하도급 관련 법제도의 적용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SI 사업 관련 법 제도는 SI 산업의 발전과 SI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매우 미

흡한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국가계약법 체계내에서 수용가능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토의하여 향후 세부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한다.

3. SI 사업 현황 및 중점 개선 과제

SI 사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SI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가진다.

먼저 SI 산업의 현실에 대한 정성적인 파악을 통하여 개선의 방향을 도출하고, 개선의 효과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제시한 후 개선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SI 산업은 그동안 고속 성장을 하며 양적인 팽창을 하여왔으며, IT 산업의 중심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으나, 현재 대내외적인 문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업체의 난립과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시장의 왜곡 현상이 증대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외국 컨설팅 업체와 하드웨어 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과 해외 수주 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의 기술력부족과 미흡한 수출경쟁력은 그동안 저가수주와 낮은 품질로 특징지워지는 SI 사업의 빈곤의 악순환 사이클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분석된다. SI기업이 기술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사업수행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협소한 시장과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체간에 과다경쟁이 있음으로 인하여 저가수주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재의 국가계약법 체계가 최저가 낙찰제를 권장하는 구조를 가짐으로 인하여 저가 수발주가 더욱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왔다. 저가수주는 사업의 품질 저하를 가져오고, 사업의 품질저하는 경쟁력제고의 실패를 가져왔다. 또한 저가수주는 사업자 수익성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기술개발에 투자하거나 인력양성에 투자할 수 없게 되어 더욱 경쟁력의 정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재의 악순환 사이클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SI Business Model을 수익을 내는

구조로 재정립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위주의 SI 사업구조를 탈피하여 고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SI 사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아웃소싱 사업대가 등 SI사업대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대가가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저가 수발주가 방지되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관점에서는 업체의 난립과 전문화의 부족이 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대기업 시장의 경우 Captive Market 비율이 매우 높으며(1998년말 전체 시장의 46% 점유에서 2000년말 36%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나머지 협소한 시장에서 여러 업체들이 과다 경쟁을 함으로 인하여 출혈 경쟁이 보편화되고 있다. 전문화의 정도가 높을 경우 업체간 우열의 가시성이 높아지므로 출혈 경쟁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문화를 잘못 활용할 경우 건실한 일반기업이나 후발 기업에게 진입장벽의 부담을 주게 되므로 공정 경쟁과 건전한 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SI 사업수행 능력의 관점에서 응용분야 사업 수행능력이나 응용분야 기술과 함께 중요한 요소가 프로세스 능력 수준이다. CMM과 SPICE가 기업의 프로세스 능력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의 경우 이들 기준으로 측정된 프로세스 능력 수준이 미국이나 인도의 소프트웨어 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인도의 경우 2001년 3월 기준 Level 5 획득업체가 25개, Level 4가 20개, Level 3가 40개 업체인데 비해 한국은 Level 3가 1개사임). 특히 CMM 등급 평가를 수행하는 CMM 선임 심사원은 2001년 현재 미국 336명, 유럽 45명, 인도 16명, 일본 12명 등 417명인데[이원희, 2002], 한국은 전무한 상황이다. 1996년 이후 CMM 심사결과 미국과 기타 국가의 프로세스 능력 등급 획득 비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1996년 이후 CMM 심사결과(단위: 개, %)

구분	조직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미국	681	38.2%	38.5%	18.5%	3.5%	1.3%
기타	331	19.9%	41.1%	21.1%	9.4%	8.5%

(Source: SEI, 2001.3)

따라서 SI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세스 능력의 조기 향상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감사제도와 감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는 사후 감리를 위주로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정부 예산의 경직성과 SI 사업의 '품질 비가시성' 특성을 고려할 때 사후 감리는 적절한 품질 향상 방안이 되지 못한다. 감사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용이나 인력 등의 가시적 투입이나 가시적 성과 위주의 감사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프로세스나 품질을 평가해야 하는 SI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아래에서 이와 같은 개선 필요성을 반영하여 SI 사업 법제도 개선 방향을 설계하여 제시한다.

4. SI 사업 법제도 개선 방향

SI 관련 법제도의 개선은 계약 및 사업수행 제도의 개선 차원과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기업구조 개선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계약 관련하여 SI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SI 사업 표준계약서의 제정이 필요하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필연적으로 발전되는 현실적 상황에 수주자와 발주자가 상호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단계별로 업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기획지원업무, 개발업무, 운영서비스 업무 및 유지보수 업무를 계약조항에 삽입하여 각 단계별 정의와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귀속주체와 소유권 및 사용권의 주체 및 시기를 규정할 필요도 있다. 요구사항의 변경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약 변경 방법과 절차의 명문화와 사업자와의 합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을 SI사업 계약일반조건에 담아 규정할 경우, 사업의 관리 효율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가 낙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방식의 경우에도 기술 위주의 계약체결보다는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협상에 치우치고 있다. 기술과 가격의 상대적 비중이 확인된 36건의 사례조사 결과 기술이 100% 적용된 계약은 5건(14%)에 불과하며 가격이 30% 비중으로 적용된 사례도 9건(2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정보통신부의 고시(2000-84)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과 조달청 훈령(1109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의 가격 평가 비중이 서로 상이하여 국가 예산 절감을 위해 조달청 훈령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조달청 훈령에서는 가격비중이 최대 30%이며, 정보통신부 고시에서는 가격비중이 최대 20%임). SI 사업의 품질 비가시성이 높은 특성을 고려할 때 가격 비중의 하향 조정과 정부 전체의 일관된 조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구조 개선 차원에서는 기업의 전문화 강화와 중소기업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기업의 전문성 강화는 프로세스 능력수준의 향상을 통한 전문 능력 강화 차원과 도메인 집종을 통한 사업 능력 강화 차원이 있다. 사업 분야 집종의 경우 산업 분야와 기술분야의 두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술 분야의 경우 시장 원리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산업 분야의 전문화는 시장원리의 작용이 미흡하여 전문화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전문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프로세스 능력 수준과 산업분야의 전문화라는 두 개의 전문화 축을 활용하는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산업분야는 여러 가지 다른 수준으로 세분화 할 수 있으나 초기에 도입하는 전문화는 너무 세분화할 경우 관리와 평가 비용이 전문화 도입 효과보다 클 경우가 있으므로 적절한 세분화 수준의 선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산업통계의 분류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즉 공공/정부, 제조, 통신 등의 분류는 공통되

고 있으며, 금융, 교육, 건강/의료, 보험, 교통, 서비스 등이 비교적 많은 분류체계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들 분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2> 대표적 분류에서의 산업영역 예

산업영역	A	B	C	D
공공/정부	O	O	O	O
금융	O	O		O
보험			O	O
건설				O
제조	O	O	O	O
정유			O	
유통	O	O		
도매				O
소매				O
서비스	O			O
통신	O	O	O	O
교통			O	O
교육		O	O	O
건강/의료			O	O
기타	O	O	O	O

- A) 한국SI연구조합, 2002년 시장기술 전망
- B) IDC, 2002
- C) IDC, Korea Software ERP Market, 2000
- D) IDC, Worldwide Enterprise ASP Forecast and Analysis, 1999-2004

SI 사업은 그 특성상 다수의 중소기업 참여가 일반적이며, 이들 중소기업의 사업품질이 전체 SI 사업의 사업품질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상위 5대 SI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1997년 54%에서 1999년 63%로 증대되는 등 대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의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건전한 육성을 통한 SI 산업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보장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각 기업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효율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SI사업은 건설사업과 비유되는 종합 구축사업이

다. 따라서 사업 수행에 여러 요소가 개입되어 있고, 수주자와 발주자간의 분쟁이 많을 개연성이 있다. 건설 산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분쟁당사자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경우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사업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조정기구가 없어 상호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입찰 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위반사태가 발생되었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취소, 시정 등을 위한 이의 신청 또는 분쟁 조정 신청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SI분쟁 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사업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SI 사업 수행의 효율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두가지 목적으로 SI 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을 토의하였다.

5. 결론 및 후속 연구

SI 관련 법제도의 개선은 수주자와 발주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도출되어야 하며, 국민 모두에게 중장기적으로 편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찰 및 낙찰제도의 개선과 수발주자 의식의 개선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SI 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정수준의 충분한 사업대가를 보장하는 수발주를 하게되면, 단기적으로는 국가예산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문기업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프로세스 능력수준의 향상을 위한 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전문화를 촉진하여 노력을 소수의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적 수준의 프로세스 능력수준에 단시간에 도달할 수 있게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 영역의 보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산업구조의 견실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분쟁조정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은 성숙한 계약 및 사업 수행 환경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에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표준계약서의 구체화와 제정을 위한 심층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표준계약서와 SI사업 일반조건의 내용 분석과 효과 분석이 조기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

전문기업제도의 도입과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장 제도는 구체화된 제도의 설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복수개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비용과 효과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신설되는 제도가 가지는 순기능 측면보다는 역기능 측면을 강조하여 연구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세스 능력수준에 의한 전문화는 CMM과 CMMI의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의 타당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나 기타 사업 수행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의 도입은 타 산업과의 비교분석 연구를 수행하여 타당성과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검증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관보 외,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하도급 거래 실태 및 개선대책 연구, 연구보고서, 2001.12
- [2] 김현수, 이형재, 박수현, SI산업 분류체계 연구, Working Paper, 한국SI학회, 2002.4
- [3] 박윤기 외, 입찰 낙찰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01.12
- [4] 이원희, IT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품질경쟁력 강화 방안, 2002.4
- [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제도 개선사업 연구보고서, 2001.12
- [6] IT Service Taxonomy: Solutions, Competitive services Categories and Demand-Side Methodology, Analysts: Philip Winthrop and Christopher Hoffman, IDC Japan, 2001